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이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1명(8급 1명)을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국립식량과학원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경력관(시청각 담당)을 전문경력관(홍보 담당)으로 직위명을 담당업무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방재안적직렬을 추가(6급 45명, 7급 18명, 8급 22명)하고, 국립식량과학원 관리운영직군 정원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관리운영직군 정원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0.0. ~ 00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농업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별표 2 전산사무관 2 다음에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5”를 삭제하며, 운전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8”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8”를 삭제하며, 전산주사보 4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2”를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4”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4”를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4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홍보 담당) 1”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시청각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3 전산사무관 2 다음에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5”를 삭제하며, 운전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농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6”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6”를 삭제하며, 전산주사보 4 다음에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방재안전서기 · 농업서기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0”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0”를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4”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4”를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4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홍보 담당) 1”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시청각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4 기계운영서기보 2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5 기계운영서기보 2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공업서기보 “4”를 “5”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5”를 “4”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4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2”를 각각 “341”로 하고, 공업서기보 “4”를

“5”로 하며, 농업연구사 “157”을 “156”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5”를 “4”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4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4”를 각각 “33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30”을 “22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조직 신설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기능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 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u>같으며</u> , <u>별표 7의 정원 중 1명(농업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② ----- -----. ----- ----- ----- ----- ----- ----- <u>같다.</u>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u> <u>· 방재안전주사 · 농업주사 · 식</u> <u>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u> <u>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신 설></u>	<u>45</u>	+45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u> <u>·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u> <u>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u> <u>또는 농촌지도사</u>	<u>45</u>	<u><삭 제></u>	-45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u> <u>안전주사보 · 농업주사보 · 시설</u> <u>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농업</u> <u>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신 설></u>	<u>18</u>	+18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18</u>	<u><삭 제></u>	-18
.	.	.	
.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방재안전 서기 · 농업서기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신 설></u>	<u>22</u>	+22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22</u>	<u><삭 제></u>	-22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u>	<u><신 설></u>	<u>4</u>	+4
<u>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u>	<u>4</u>	<u><삭 제></u>	-4
<u>전문경력관 다군(시청각 담당)</u>	<u>1</u>	<u><삭 제></u>	-1
<u>전문경력관 다군(홍보 담당)</u>	<u><신 설></u>	<u>1</u>	+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u> <u>· 방재안전주사 · 농업주사 · 식</u> <u>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u> <u>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신 설></u>	<u>45</u>	+45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u> <u>·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u> <u>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u> <u>또는 농촌지도사</u>	<u>45</u>	<u><삭 제></u>	-45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u> <u>안전주사보 · 농업주사보 · 시설</u> <u>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농업</u> <u>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신 설></u>	<u>16</u>	+16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16</u>	<u><삭 제></u>	-16
.	.	.	
.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방재안전 서기 · 농업서기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신 설></u>	<u>20</u>	+20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20</u>	<u><삭 제></u>	-20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u>	<u><신 설></u>	<u>4</u>	+4
<u>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u>	<u>4</u>	<u><삭 제></u>	-4
<u>전문경력관 다군(시청각 담당)</u>	<u>1</u>	<u><삭 제></u>	-1
<u>전문경력관 다군(홍보 담당)</u>	<u><신 설></u>	<u>1</u>	+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u>	<u>1</u>	<u><삭 제></u>	-1
<u>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u>	<u><신 설></u>	<u>1</u>	+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u>	<u>1</u>	<u><삭 제></u>	-1
<u>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u>	<u><신 설></u>	<u>1</u>	+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4</u>	<u>5</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5</u>	<u>4</u>	-1
<u>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u>	<u>1</u>	<u><삭 제></u>	-1
<u>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u>	<u><신 설></u>	<u>1</u>	+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42</u>	<u>341</u>	-1
일반직 계	<u>342</u>	<u>341</u>	-1
.	.	.	
.	.	.	
공업서기보	<u>4</u>	<u>5</u>	+1
.	.	.	
.	.	.	
농업연구사	<u>157</u>	<u>156</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5</u>	<u>4</u>	-1
<u>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u>	<u>1</u>	<u><삭 제></u>	-1
<u>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u>	<u><신 설></u>	<u>1</u>	+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34</u>	<u>333</u>	-1
일반직 계	<u>334</u>	<u>333</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0</u>	<u>229</u>	-1
.	.	.	